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3일 15시 53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농기계 임대 계약 취소 및 정지	3

농기계 임대 계약 취소 및 정지

2014.04.17 조회수 728 등록자 박종일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2
담당부서	농업정책과
상위법령	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
조례	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농지농정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7-01-06
규제시행/폐지일	2007-01-06
규제내용	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 1.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.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때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4. 임대료를 체납한 때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9-0003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3

Yeosu Web Contents

